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20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조효동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이에, D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1) 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2019. 1.경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단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 30.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 10106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4. 10. 'D는 원고에게 829,10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7.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77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F는 원고에게 44,213,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 및 F와 사이에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와 F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D와 F에 대하여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은 확정판결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H은 D와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I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 B의 인척으로서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J(또는 K)'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H은 원고 외에도 24개의 업체와 거래하였으나 위 업체들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24개의 피해 업체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 I이 위 채권단의 대표를 맡았다.

2) H은 D 및 F의 명의로 2018년 가을경 일본 바이어인 L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L에 의류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H은 원고가 D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자, 과거에 자신의 직원이었던 M가 대표로 있는 E와 공모하여, L가 D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3) 한편, 피고측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은 2019. 1.경 H과 통모하여 D 및 F가 L로부터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지급받는 물품대금으로부터 피고들이 D 및 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즉, H은 2019. 1.경 I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D 및 F가 L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았다.

4) 위 채권양도계약은 D 및 F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인 4억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H이 D와 F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I이 피고측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D가 L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지, L가 D와 통모하여 E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E에게 입금하였는지, D 내지는 H이 I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D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김성래, 판사 심용아

1) 주식회사 G(갑 제8호증)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